사회복지시설 관련 안전 제도 교육

<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자・종사자・점검원 >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부장

(건축사 / 건축시공기술사)



국토안전관리원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목차

사회복지시설 관련 안전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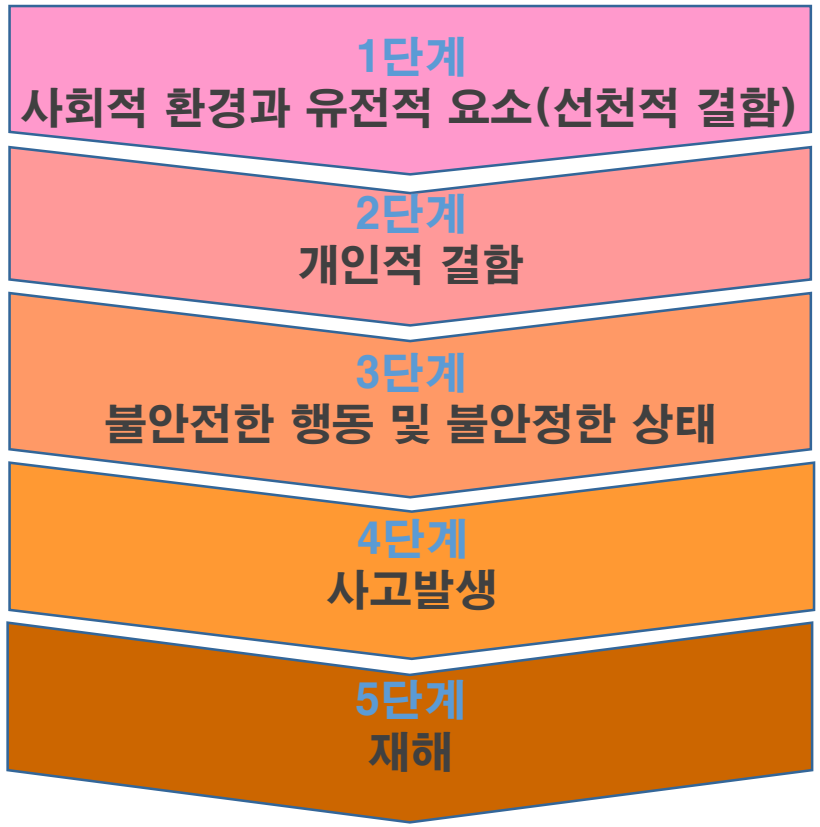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_개요
 (중대재해처벌법)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_개요
 (시설물안전법)
3. 「시설물안전법」_안전점검
4. 「시설물안전법」_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5. 「사회복지사업법」_안전점검

하인리히의 법칙

하인리히의 법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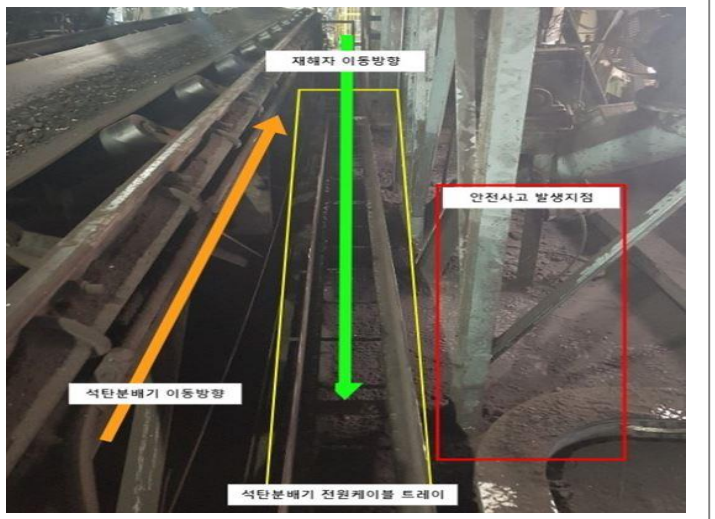
사고 발생 5단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_배경

배경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및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의 산업재해 지속 발생
-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고 등의 시민재해로 인한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18.12.10)



▲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4.29)



▲ 세월호 사고
(14.4.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_목적

목적

-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

- **처벌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법인·기관 50억 이하 벌금)**

구 분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내 용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6개월 이상 치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2개월 이상 치료) -동일한 원인의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3개월 이상 치료)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시설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 등 ***모든 지하역사 (출입통로, 대합실, 환승통로)** ***철도 대합실, 지하도상가 (연면적2천M2 이상)** ***실내주차장(연면적2천M2 이상)**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_재해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대산업재해

- 사망자 1명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

- 우든, 탄탄, 탈루엔, 스티렌, 등의 급성중독
- 보건의료종사자의 B,C형 간염, 매독 등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발생한 열사병

적용 제외

-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법인 또는 전체 기관의 전체 종사자 규모 기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_체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조치)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등)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과 절차,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24년

시설물 안전법의 이해

1. 『시설물 안전법』 개요_(1)

배경(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90년대 이전 건설산업은 물량위주의 교량, 주택건설 등 신규 사업 주력으로 유지관리에 소홀

 '90년대 후 대형시설물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중요성 부각



▲ 창선대교 붕괴(92.7.30)



▲ 성수대교 붕괴(94.10.21)



▲ 삼풍백화점 붕괴(95.6.29)

1. 『시설물 안전법』 개요_(2)

주요 내용(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 1. 5. 제정)

내용



- 시설물의 종류, 범위
- 점검·진단실시 사항
-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실태점검 및 사고조사 실시
- 관리책임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 시설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목적

- 점검 및 적정 유지관리 → 재해.재난 예방
- 시설물 효용 증진 → 공중안전 확보, 국민복리 증진

특별법의 지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타법에 우선 적용

2. 『시설물 안전법』 주요내용_(1)

용어

- **시설물** :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
 * 제3종시설물은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시설물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



사면

2. 『시설물 안전법』 주요내용_(2)

용어

- **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
- **긴급안전점검** : 시설물이 붕괴 · 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구 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제1종	○	○	○	○
제2종	○	○		○
제3종	○			

2. 『시설물 안전법』 주요내용_(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 1]

구분	제1종 시설물	제2종 시설물
건축물		제1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로서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서울・광명・천안아산・구미・동대구・동탄・부산역, 공항철도 서울역사, 산본역쇼핑센터**)	연면적 5천㎡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숙박・휴게시설 (**시청・신설동역, 성균관대역 상업시설 등 946개소**)
	연면적 1만㎡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연면적 5천㎡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

2. 『시설물 안전법』 주요내용_(4)

제3종 시설물의 범위 [시행령 별표 1의2] ('20.4.7시행)

구 분	제3종 시설물
건축분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제1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
가. 공동주택	1) 5층 이상~15층 이하인 아파트 2) 연면적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연면적 660㎡ 초과인 기숙사
나. 공동주택 외 건축물	1)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30,000㎡ 미만의 건축물 2) 1,000㎡ 이상~5,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3) 500㎡ 이상~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만), 종교시설, 운동시설 4) 300㎡ 이상~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1,000㎡ 이상의 공공업무시설 6) 5,000㎡ 미만인 지하상가(지하보도 포함)
다. 기타	위 규모 외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3.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건축물)

※ 수량 : 2024년 1월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관리법	교육시설법	사회복지사업법
1종 시설물(3,600개), 2종 시설물 (77,400개소), 3종 시설물(29,800개소)		
다중이용업소, 집합건물(3,000m2↑) 특수구조건축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경로당,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 소규모 취약시설 (80,000개소) :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등

'24년

시설물 안전법상 안전점검 등

1. 『시설물 안전법』_(1)

건축물 유지관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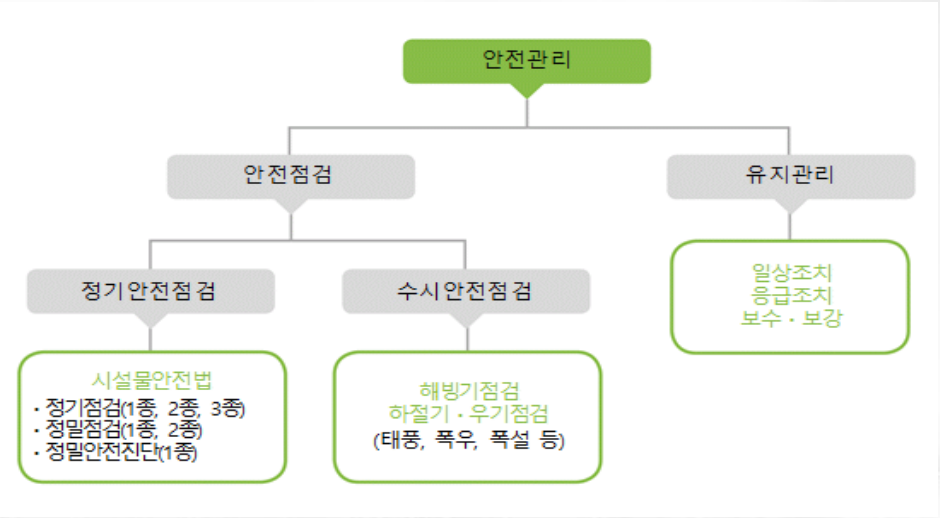
- **목적** : 완성된 건축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상점검,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당초의 성능과 근접하게 복구하여 원래 건설된 상태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안락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

사후 보전	경과년수 증가에 의한 열화 및 고장, 재해에 의한 파손 · 고장에 대해 긴급으로 수리를 실시하여 일단 사용 가능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
예방 보전	정기적인 청소 및 점검 결과,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 사전에 해결하고 건물의 안전 확보(사고 방지)와 기능 유지(열화 방지)를 꾀하고, 사용 시의 고장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
개량 보전	건설 당초의 기능 등을 설비 기기나 외장을 개량하여 내진 성능 및 장애인접근성능, 에너지 절약 성능의 향상(법적 부적격 해소와 사회적 열화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

1. 『시설물 안전법』_(2)

안전관리 업무

-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과 결함의 사전 예방과 발생된 결함을 조치하는 유지관리 활동으로 구분
-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법적 근거에 의한 점검과 시설관리자 등이 자체적으로 하는 점검으로 구분



구분		실시주기		비고
법체계	종류	건축물	토목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법)	긴급점검	필요시	필요시	모든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반기에 1회 이상**	**반기에 1회 이상**	「시설물안전법」 1,2,3종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정밀안전점검	2~4년	1~3년	
	정밀안전진단	4~6년	4~6년	「시설물안전법」 1종 시설물 안전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_(1)

진단 및 점검의 종류(시안법상 1, 2, 3종 시설물)



!! 심각한 결함 발생 및 위험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_(2)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조사항목(철근콘크리트구조)과 비교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등 주요부재의 내력검토		●
부재상태 및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	●
	철근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피복두께		●
	균열	균열 폭 및 면적률	●	●
	콘크리트 탄산화	탄산화 진행깊이	●	●
	철근부식	철근부식상태 및 부식환경		●
	표면 열화	박리, 박락 및 층분리, 누수, 백태, 철근노출	●	●
	염화물함유량	(필요시)염화물이온 함유량		●
	실내시험	(필요시)코어강도, 단위중량 등		●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	●
	부등침하	부등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	●

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_(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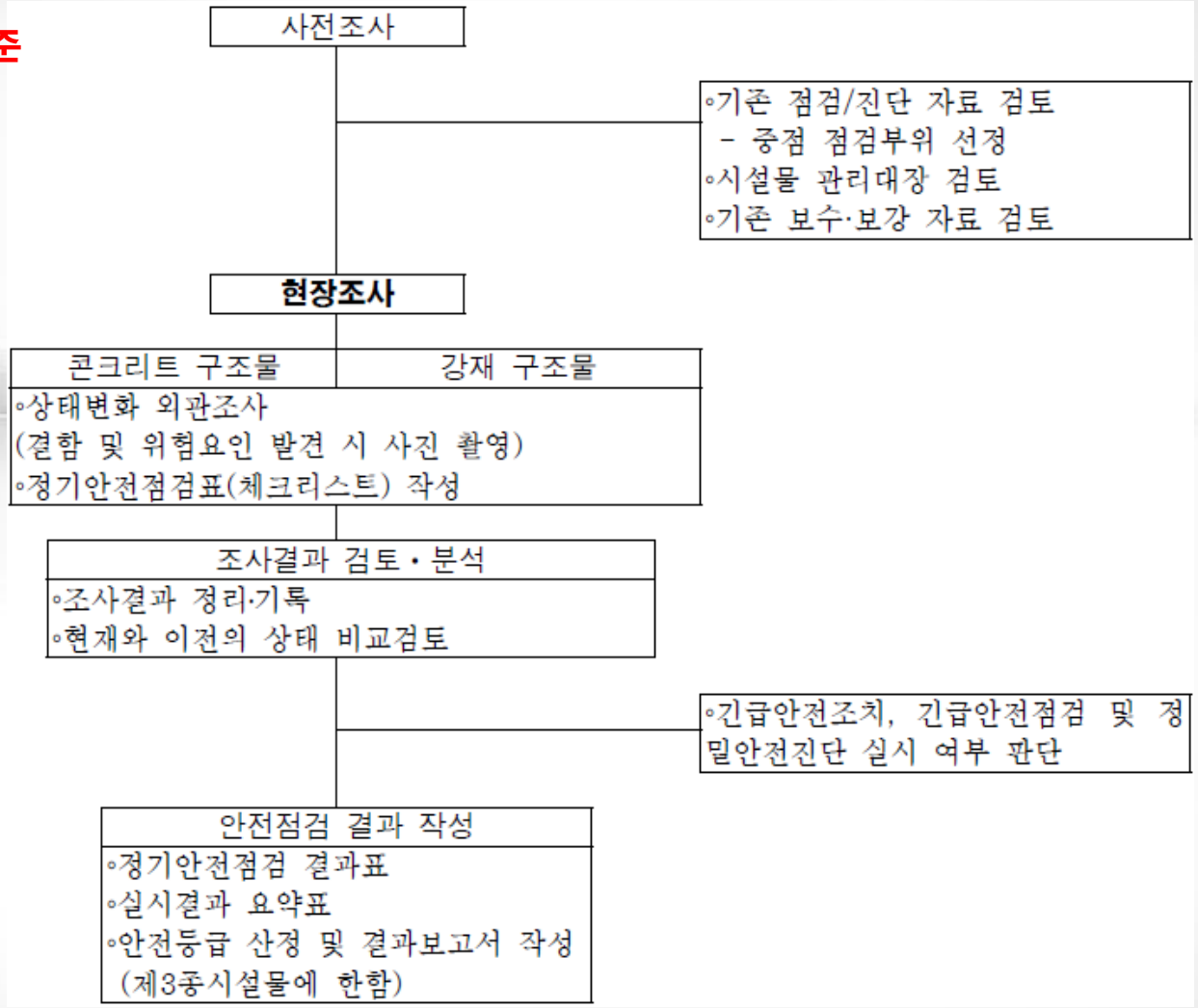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조사항목(철골구조)과 비교

구 분	조사항목	내 용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부재의 내력검토		●
	접합부내력	기둥-기둥, 보-보, 기둥-보, 주각부 등의 주요부위		●
부재상태 및 내구성	강재의 규격	강재강도 및 부재규격	●	●
	용접 접합상태	용접부 결함	●	●
	볼트 접합상태	볼트 누락, 풀림, 이완	●	●
	강재의 부식도	도장과 강재부식	●	●
	접합재 부식도	용접 및 볼트접합부 부식	●	●
	내화피복	내화피복 두께 및 손상	●	●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	●
	부등침하	부등침하에 의한 구조 및 부재의 기울기	●	●

3. 정기안전점검_(1)

정기안전점검

-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순찰 수준)**의 점검
 -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
-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 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



[정기안전점검 흐름도]

3. 정기안전점검_(2)

정기안전점검 조사항목

조사항목	세부내용
•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 하중조건, 기초 · 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 **균열**발생 상태	• 균열발생 위치, 유형 및 형상(종류), 크기(폭, 길이 등), 진행상황, 누수여부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 변형 상태 - 부등침하, 편심·집중 하중상태, 과다적재 하중상태, 진동·충격 상태, 이상체감 등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상태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변위 등
• **보수·보강 실태** 조사 및 기록	
• 계절별 주요 점검항목	

3. 정기안전점검_(3)

정기안전점검 조사방법

조사방법	세부내용
• 육안과 간단한 측정기기로 검사	
•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	
• 초기점검에서 도출된 붕괴유발 부재 등에서 문제점 발견 시 관리주체에 통보	•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
• 도면, 계산서, 과거의 점검·보수기록, 환경 및 사용상태 등의 유지관리 자료의 정비 상황 파악	
• 매 반기마다 전체 건축물을 수평 혹은 수직, 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부재별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점검결과의 표준서식에 기록	• (필요시) 개략도면으로 표시
• 사진자료는 매 점검시 가능한 같은 위치에서, 전술한 조사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촬영	

'24년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1)

소규모 취약시설 대상

사회복지시설(78,338개소)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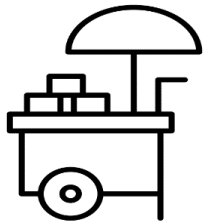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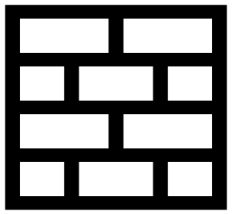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노숙인시설

전통시장 등(1,052개소)



전통시장
시장부속시설(아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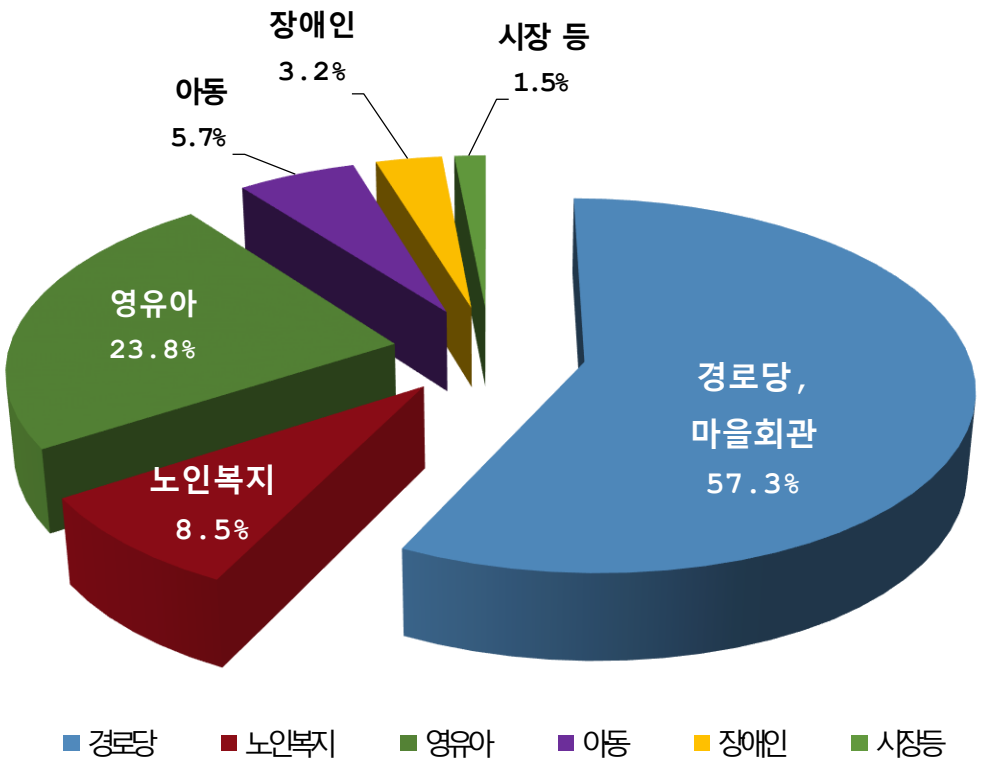


농어촌교량
옹벽/사면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2)

소규모 취약시설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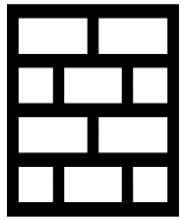
전체 소규모 취약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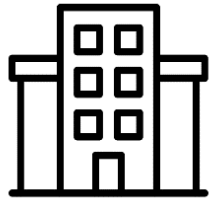
★ 경로당 구조

주요 특징

- 층고: 1~2층
- 평균 면적: 200m2 내외
- 결함: 균열, 누수, 단차, 침하



벽돌구조
52%



콘크리트
35%



철골구조
6%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3)

안전점검 대상선정 및 통보

점검 대상시설 제출 요청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시설 관리자
'24년도 안전점검 신청 접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안전점검 및 관리계획_전년도 9~10월) 시설 관리자(안전점검 신청_전년도 12월) www.sfms.or.kr
'24년도 대상시설 선정	시설물의 노후도, 사용 인원 등 우선순위 고려 선정(2월)
'24년도 안전점검시기 및 계획 통보	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점검 시기 통보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4)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_지자체 담당자

「시설물 안전법」

제출 내용

①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및 규모 등 현황
②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변동 현황
③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관한 정보
④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설계도서 보유 현황
⑤ 관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작성 및 제출

시·군·구 — 담당 공무원이 작성

↓ 신규 계획 수립 www,sfms,or,kr

광역시·도 10월15일 — 담당 공무원이 제출

↓ 확인 및 승인(제출) www,sfms,or,kr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10월31일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5)

안전점검(관리원 수행+시니어)

소규모취약시설 안전관리시스템 (www.sfms.or.kr)



관리원 수행 안전점검 (시설물 안전법)

국토안전관리원

www.sfms.or.kr(시설점검)

개요/설계도서/청문/손상/보수 유지관리 방안/총평/**안전 등급**



점검원 점검 (사회복지사업법)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 (시니어 점검원)

www.sfms.or.kr (자율점검/자체점검)

보험/소방/전기/가스/시설물 25개 체크리스트(시설물18개)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6)

관리원 수행 무상 안전점검(시설점검)

안전점검 대상시설 선정 및 통보

안전점검 일정 통보
(점검 1~2주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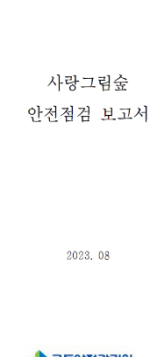
안전점검 실시
www.sfm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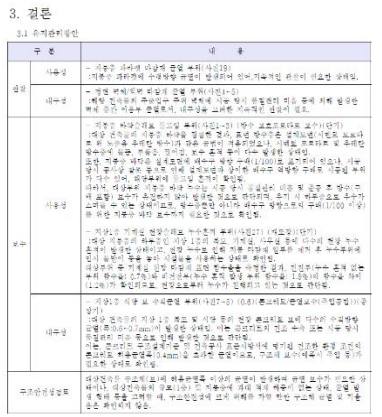
안전점검 결과 통보
(양호/보통/미흡/불량)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7)

시니어 안전점검(자율점검/자체점검)

지역별 수행기관 선정
(지자체)

점검원 교육 수료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점검 실시
www.sfm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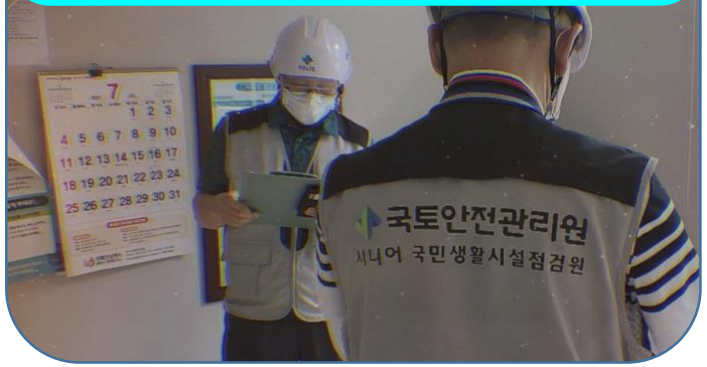
점검결과 전송
(국토안전관리원_모니터링)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시니어)
(www.sfm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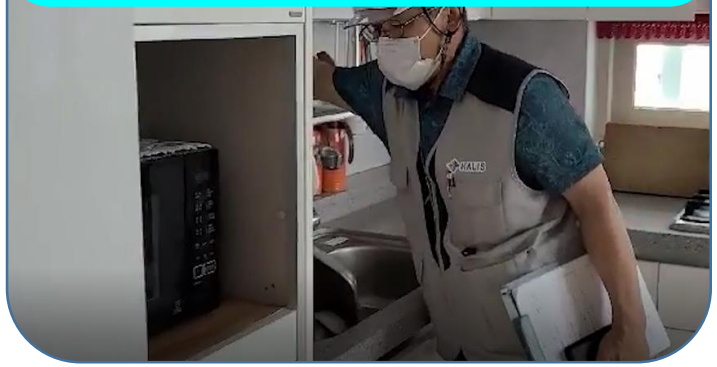
1. 외부 점검(전경, 시설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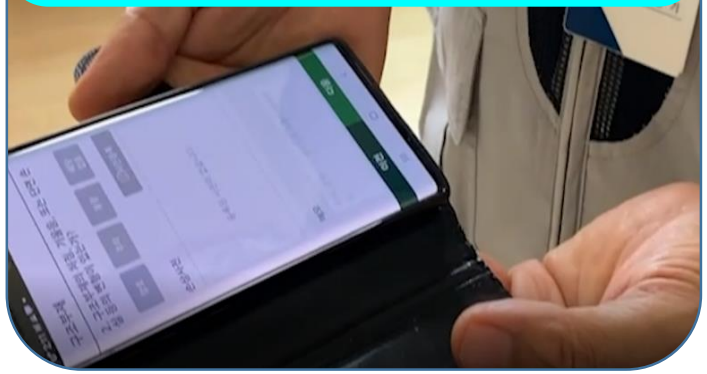
2. 내·외부 시설점검



3. 시설 위험요소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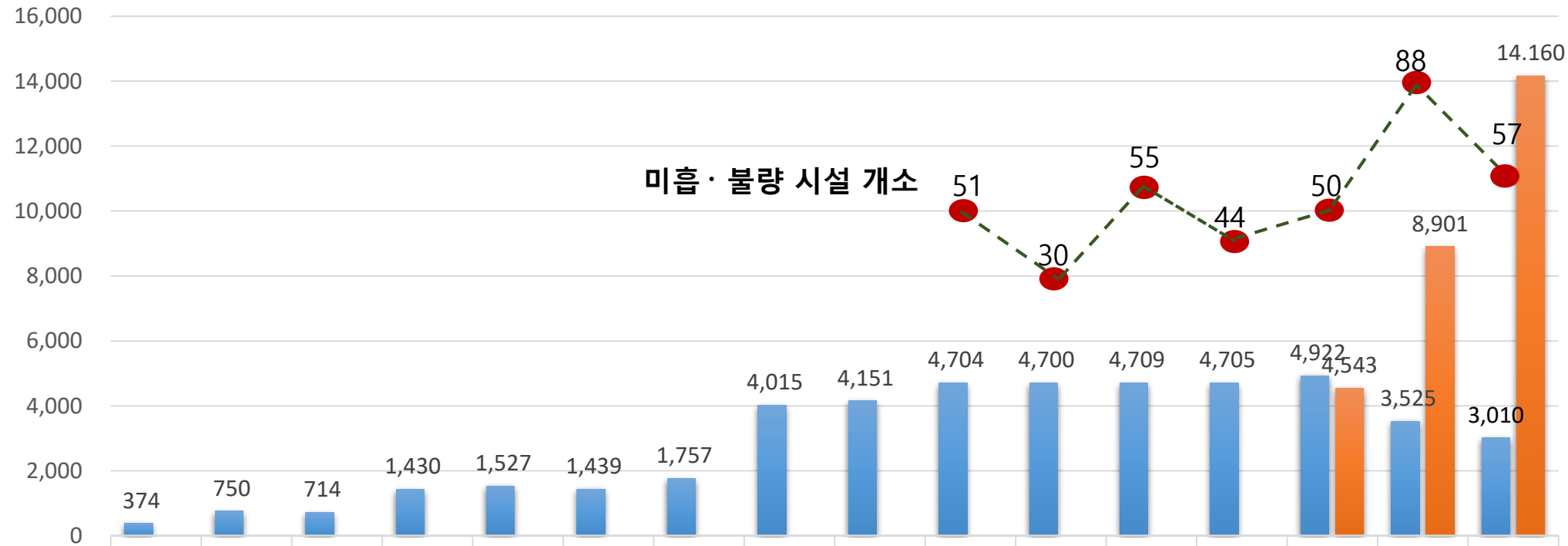
4. 점검 내역 전송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8)

안전점검 실적

관리원 수행 시설점검(46,432개소) + 점검원 수행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관리원	374	750	714	1,430	1,527	1,439	1,757	4,015	4,151	4,704	4,700	4,709	4,705	4,922	3,525	3,010
시니어														4,543	8,901	14,160

4.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_(9)

안전점검 사례

천장 철근 노출



군산 경로당

균열, 기울음



경주 고성2리 경로당

결로, 곰팡이



공주 가교2리 경로당

처마 철근 노출



여수 감도 경로당

외벽 균열



진주 강남 경로당

누수, 곰팡이



공주 가교2리 경로당

'24년

사회복지사업법상 안전점검

1. 사회복지사업법_보험

보험가입 의무(법 제34조의3)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사업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설의 범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관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공제와 보험

- **공제**: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에 의해 운영(상호부조의 개념)되는 비영리 조직
- **보험**: 동질의 위험에 처한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리 조직

1. 사회복지사업법_안전점검_(1)

시설의 안전점검 등(법 제34조의4)

①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운영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기관 및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 4

-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기관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_안전점검_(2)

동절기·하절기 안전점검(경로당 외 사회복지시설)

*** (점검총괄) 보건복지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시설물 관리주체(시설장)	노인의료,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사회복지관 등
지자체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 협의하여 대상시설 선정(100개소 ↑)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설물_국토안전관리원, 소방)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

- **안전점검항목_69개**

 안전관리계획수립(4) + 책임보험 가입여부(3) + 소방안전관리(24) + 전기안전관리(3) + 가스안전관리(5)
 + 하절기 재난대응(7) + 시설물 안전관리(6) + 급식위행안전관리(7) + 감염병(7) + 종합의견, 기능보강(3)

1. 사회복지사업법_안전점검_(3)

경로당 등 안전점검 계획

- **(점검 총괄)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로당, 노인교실 대상 안전점검 제도 마련(복지부) + 점검도구(웹) 및 체계 지원(국토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지자체 현장점검	지방자치단체 * **스마트 시설안전관리 매니저(시니어 점검원)에 의한 점검 포함**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 협의하여 대상 선정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시설물_국토안전관리원, 소방)

경로당 안전점검표

- **안전점검항목**

책임보험 가입여부(1) + 소방안전관리(2) + 전기안전관리(2) + 가스안전관리(2) + 시설물 안전관리(18) + 종합의견

"국민과 함께 행복을 열어가는 국토안전 지킴이"

수 고 하 셨 습 니 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시설안전실

김영식 부장 / 건축사 · 건축시공기술사

055-771-4913

gatsby2424@kalis.or.kr

국토안전관리원
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